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32호 2021. 11. 15.(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87호)

공 고

-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328호)
-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33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고 시

예천군 고시 제 2021-87호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61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 11. 15.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 개선, 재해위험시설 정비, 주택개량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3. 위 치 : 예천군 보문면 독양2리 일원

4. 사 업 비 : 2,026백만원(국비 1,506, 지방비 467, 자부담 53)

→ 2,000백만원(국비 1,506, 지방비 467, 자부담 27)

5. 주요 사업내용

○ 노후주택정비

슬레이트지붕개량 6호, 빈집철거 20호, 노후 집수리 8호

→ 슬레이트지붕개량 5호, 빈집철거 19호, 노후 집수리 6호

○ 안전 · 위생 확보

재래식화장실정비 9호, 세천정비 169m, 축대정비 214m, 배수로정비 191m

→ 재래식화장실정비 9호, 세천정비 90, 축대정비 393m, 배수로정비 130m

○ 기초생활인프라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6,054㎡, 안길 확포장 1,613㎡

→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4,331㎡, 안길 확포장 4,843㎡

○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 1식, 지방상수도 확장 3,458m, 주차장 및 쉼터 조성 1식

→ 마을회관리모델링 1식, 지방상수도 확장 3,367m

○ 경관시설정비

마을 담장정비 126m, 쓰레기분리시설 1식, 타일벽화 1식

→ 마을 담장정비 126m, 쓰레기분리시설 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1식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위·수탁 : 한국농어촌공사)

7.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 해당없음

9.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054-650-656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054-650-7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의견제출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 나.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다.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제출된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실시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관려부서 의뢰

5.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082 팩스 054-650-6089
- 전자우편 : neonpms@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 ① 규칙의 제정등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검토·심의한다.

② 제출된 의견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결과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성명	성별(남, 여)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제
로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 정 지 원 실	
연 락 처	지방행정주사보 박민순 054-650-6082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외부위원 수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수수료 개정 등에 따라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위원 인원 변경(안 제9조제4항)

○ 현행 : 심의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 개정 : 심의회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나.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변경(안 제8조제2항
별표)

○ 현행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개정 : 1GB마다 800원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832, 팩스 : 054-650-6089
- 전자우편(이메일) : k jy190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2021-1337호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2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제8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화: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집행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복제물의 경우 매체비용은 별도이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정보공개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외부전문가로 하되, 그 중 <u>2분의 1</u>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 ⑥ (생략)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3분의 2</u> ----- -----. ⑤ · ⑥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